

# 구제역 예방을 위해



# 반드시 준수합니다.

##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.

-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농가는 **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합니다.
  -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발생농장은 **보상금 전액**을 감액합니다.
- \* 신고 지연,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준수사항 불이행 시에도 보상금이 감액됩니다.



## 가축을 거래할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.

- (돼지·염소)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, (소·종돈)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
- \*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, 자돈, 어린 염소를 거래하려는 소유자 등은 어미 소, 모돈, 어미 염소의 '이전 예방접종일'을 기록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합니다.

## 농장 내부와 외부를 매일 소독하고, 외부인·출입차량 통제·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니다.

- 일반인은 국내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,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이 발생한 국가의 가축 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.
- \*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철저
- \*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가축전염병 해외 발생 현황 등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<https://www.qia.go.kr>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역수칙, 예방접종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.

## 의심 가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합니다.

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  
의심 가축 신고전화(국번없이)

농림축산검역본부  
1588-9060

지방자치단체  
1588-4060